

집합투자증권 요약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집합투자증권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이 설명서는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와는 별도로 판매회사가 고객님께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명	• 디에스 Brave S 일반사모투자신탁							
금융상품의 내용 (투자대상 및 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본 펀드의 투자대상은 국내 상장주식 및 장내/외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며, 주식 롱바이어스, 롱숏 페어트레이딩, 파생상품, 이벤트 드리븐 등의 전략을 보유함금융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산)운용사가 작성하고 판매직원이 제공한 핵심상품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사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MMF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또는 증권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특별자산에 투자	운용에 있어서 증권· 부동산·특별자산 관련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 투자	Money Market Fund의 약자로서 펀드 재산의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			
자산운용회사	• 디에스자산운용 (02-6296-7000) / www.dsasset.com							
운용사가 정한 위험등급	• 1등급(매우높은위험)		레버리지 (차입 등) 한도	• 200% 이내				
판매사가 정한 위험등급	• 1등급(매우높은위험)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 투자대상 상품, 투자자산 변동성, 위험도 및 운용사가 정한 위험등급 등을 고려하여 분류							
해당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 판매사가 정한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참조(3p)							
유동성 위험	중도해지 불가	중도해지 시 비용발생	중도해지 허용	○				
	• 중도해지 허용: 수익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초자산의 가격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여부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대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펀드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향후 시장상황 및 기초자산 가격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대수익의 제시가 불가 합니다. (단, 목표전환형 펀드 등의 경우에는 구조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 시 손익이 확정될 수 있음)							
손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및 손실추정액	• 본 상품은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위험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가 작성하고 판매직원이 제공한 핵심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종료 조건	• 본 상품은 계약상 만기에 이르기 전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 계약이 종료되는 조건이 없습니다.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사항	• 본 상품은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p>임의해지</p> <p>✓ 펀드를 설정한 자산운용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펀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펀드를 해지할 수 있으며</u>, 이 경우 자산운용사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p> <p>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 위의 3, 4호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u>소규모펀드 임의해지 할 수 있으며</u>, 자산운용사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중 처리 방안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p>
계약기간, 계약의 해지·해제 관련사항	<p>의무해지</p> <p>✓ 다음 각 호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u>지체 없이 투자신탁(펀드)를 해지하여야 합니다.</u></p> <p>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p> <p>투자자는 위의 임의해지 및 의무해지 발생시 ① 당사로부터 <u>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u> 받습니다. ② 공제한 금액 및 시장상황에 따라 <u>투자한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u>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부동산임대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u>합산하여 종합과세</u> 됩니다.</p>
위법계약해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위법계약 해지사유가 있음을 고객이 서면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최초 수수료 납부한 날 중 늦은 때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가능하며,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합니다. 회사는 위법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심사를 거쳐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정당한 거절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소비자는 분쟁의 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자료열람요구를 받은 경우 심사를 거쳐 6영업일 이내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정당한 거절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합니다.
청약철회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형 고난도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해당되는 항목으로 본 상품은 모집형 고난도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난도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해당되는 항목으로 본 상품은 고난도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목표시장 설정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난도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해당되는 항목으로 본 상품은 고난도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의 상담센터(1588-0365)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www.shinhansec.com)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고객님께서는 상품 내용 및 이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해당 상품의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www.fss.or.kr), 당사 소비자보호부(02-3772-3000) 등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이 있을 경우 당사 MTS 및 홈페이지(www.shinhansec.com) 상의 전자민원을 통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자본시장법상 고난도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 해당되는 항목(고난도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의는 P.4의 Q.5 참고)

판매사가 정한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펀드 위험등급	고객 투자성향	위험등급의 의미		유의사항
		투자자산 기준 (설정 3년 미만)	시장위험(VaR) ^{주4)} 기준 (설정 3년 경과)	
1등급 (매우높은 위험)	공격 투자형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0% 초과	위험선호도가 매우 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2등급 (높은위험)	적극 투자형	- 고위험자산 ^{주1)} 에 8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0% 이하	위험선호도가 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3등급 (다소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0% 이하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4등급 (보통위험)	위험 중립형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 ^{주2)} 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0% 이하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5등급 (낮은위험)	안정 추구형	- 저위험자산 ^{주3)} 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0% 이하	투자원금의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6등급 (매우낮은 위험)	안정형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이하	일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주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4)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값 00%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 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00%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상기 표에 정의된 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집합투자증권 요약설명서에 기재된 위험등급은 판매사(신한투자증권)가 산정한 위험등급으로 자산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의 위험등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험등급은 펀드 운용 전략, 자산 변동성에 따른 자산운용사 또는 판매사의 결정에 의하여 수시, 정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초 투자시점 이후에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펀드 위험등급을 확인하고 투자(보유)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사(신한투자증권)는 환율 위험 및 유동성 위험, 그 밖의 명시되지 않은 요소 등을 고려하여 내규에 따라 위험등급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단, 환율위험에 대한 해자가 이루어져서 환율 변동성의 영향이 현저히 줄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환율위험이 위험등급에 반영된 경우 등 등급 상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원, 분쟁 또는 상담요청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

Q1. 펀드를 가입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는 무엇이 있나요?

- 펀드의 운용구조를 살펴보면, 판매사,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가 관여하게 되며 이러한 기관별로 보수 및 수수료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판매수수료는 고객이 입금 시 차감되어 원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판매보수, 운용보수, 사무관리보수 등은 투자원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순자산총액 산출 시 차감되는 비용입니다.

Q2. 펀드를 신규 · 매입 · 환매의 취소가 가능한 시간은?

- 펀드의 신규, 매입, 환매의 취소 가능한 시간은 개별펀드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펀드의 핵심상품설명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취소 가능한 시간이 지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가 불가능하며 '폐쇄형'으로 설정된 펀드의 경우 환매가 제한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 펀드 환매 시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세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면, 편입된 주식부분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해를 보았을 경우에도 과세대상 소득(채권이자, 채권매매 차익, 주식 배당소득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펀드의 결산, 재투자는 무엇인가요?

- 결산은 펀드의 운용성과를 계산하여 이익금과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로, 통상 설정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매년 실시하게 되며 펀드별로 결산일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익금에서 신탁보수, 제비용, 세금 등을 공제하고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이익분배금이라고 하며, 이익분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수익증권을 다시 매입하는 것을 재투자라고 합니다. 펀드의 운용 성과에 따라 결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5. 고난도 집합투자증권은 무엇인가요?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말합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투자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약철회권(모집식에 한함), 숙려기간 등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가 갖는 권리 및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이행확인	본 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한 내용과 고객에게 교부된 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신한투자증권	지점(센터)	☎
	직 위	직원명	(서명)

※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본 설명서에서 사용된 금융용어 중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우측 QR 코드를 찍으세요. 금융감독원 FINE에서 제공하는 금융용어사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